

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

제출연월일 : '99. 9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☐ 제안이유

'99.3.23 제3회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규제의 완화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- 가. 공수의 위촉범위를 개업중인 수의사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로 확대함(안 제2조)
- 나. 공수의의 월 순회출장 횟수를 삭제함(안 제6조제1항)
- 다. 공수의의 당월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함(안 제6조 제2항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(안)

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촉)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중에서 1명의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5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①공수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대비

현행	개정안
제2조(위촉) <u>시장은 개업중인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를 1명을 위촉할 수 있다.</u>	제2조(위촉) <u>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중에서 1명의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다.</u>
제6조(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) ① <u>공수의는 월10일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</u>	제6조(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) ① <u>공수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</u>
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<u>5일까지</u>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10일-----.